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06호 2025. 4. 14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규 칙

○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제1352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4월 1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규칙 제1352호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예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-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업소 기준 완화(안 제3조)
 - 예천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삭제